

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김형철 의원 등 9명(2025. 11. 24.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(2025. 12. 22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형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.
- 이에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실태조사 및 중대재해 예방 자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컨설팅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제안근거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중대재해 예방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7조에서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컨설팅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

- 관련법령을 살펴보면,

본 조례안에서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 및 의무체계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, 포항시가 관리주체로서 수행하여야 할 예방·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,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, 홍보 등 지원적 성격의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종합검토 결과,

상위법에서 직접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이를 통해 포항시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